

# 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0000-0소위00-행00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0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27 임야 337m<sup>2</sup> 중 편입지 86m<sup>2</sup>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00 임야 337m<sup>2</sup> 중 편입지 86m<sup>2</sup>와 잔여지 251m<sup>2</sup>, 같은 동 000-28 임야 98m<sup>2</sup> 중 편입지 91m<sup>2</sup>와 잔여지 7m<sup>2</sup>에 대해 각 편입지는 매수하고 잔여지는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 .0. OO △△△ □□동 000-23 임야 442m<sup>2</sup>(붙임1,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000-23 임야 7m<sup>2</sup>, 같은 동 000-27 임야 337m<sup>2</sup>, 같은 동

000-28 임야 98㎡(불임1, 이하 각 ‘민원토지1, 2, 3’이라 한다)로 분할<sup>1)</sup>하였다.

0000. 0.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관계기관이 시행하여 완료한 ‘■■0□□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민원토지2, 3이 불법으로 편입(불임2)되어 더이상 사용이 어려워졌으니,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

##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토지3에 대한 매수청구는 검토 후 판단 예정이나, 민원토지2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불임3 변경 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불임3 변경 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에도 붕괴위험■■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 0-0□□ 붕괴위험지 재해예방사업 설계도’(이하 ‘이 민원사업 설계도’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민원사업 구역을 표시한 용지도(불임4, 이하 ‘사업구역 용지도’라 한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시행자인 관계기관이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다르게 민원토지2에 이 민원사업을 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기에 관계기관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나.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같게 시공되었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업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0000. 0. 이 민원사업을 위한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위·수탁 협약」(이하 ‘이 민원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피신청인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1) 신청인은 민원토지1은 0000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대로 1류, 폭 00m~00m, 불임8), 민원토지3은 피신청인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하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불임8)되어 있어, 이를 분할하고 남은 민원토지2를 신청인의 00에게 00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였다.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자이기에 민원토지2, 3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0□□ 봉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 위치: OO △△△ □□동 산00-13 일원(산00-1, 000-23, 000-24 일부 편입)
- 총 연장: 000m
- 공사기간: 0000. 0. ~ 0000. 0.
- 사업비: 0,000백만 원(국비 0,000백만 원, 시비 0,000백만 원, 구비 0,000백만 원)
- 사업내용: ◆◆◆옹벽(0~0단), 000(000공), 00000, 000 등
- 시행자: 피신청인(관계기관에 사업 위탁)

나. 피신청인은 0000. 0. 관계기관과 이 민원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관계기관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기관명	주요 내용	비고
피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기간 내 사업비 부담,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인수</li><li>○ 공사완료 후 준공고시 등 사업 준공절차 이행</li></ul>	
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 민원사업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li><li>○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li><li>○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기관으로 시설물 인계</li><li>○ 사업시행에 따른 시공 관리 및 품질확보 책임과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부대업무</li></ul>	

다. 이 민원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는 민원토지2 337㎡ 중 86㎡, 민원토지3 98㎡ 중 91㎡로 총 177㎡이고, 잔여지는 민원토지2 251㎡, 민원토지3 7㎡로 총 258㎡이다. 편입지 및 잔여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위치 및 형상 등 구체적인 현황은 붙임2와 같다.

소재지		당 초	편입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면적(m <sup>2</sup> )	
계		442	177	265	분할전 토지
O O △△△ □□동	000-23	임야	7	0	민원토지1
	000-27	임야	337	86	민원토지2
	000-28	임야	98	91	민원토지3

라. 이 민원사업의 주요 고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 자	제 목	공문번호
0000. 0. 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제0000-46호
0000. 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제0000-112호
0000. 0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0□□)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고시 제0000-165호

마. 분할전 토지는 이 민원사업 전에는 천막 및 폐자재 등의 적재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이 민원사업으로 민원토지2의 잔여지 251m<sup>2</sup>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각 109m<sup>2</sup>(이하 ‘잔여지1’ 라 한다)와 142m<sup>2</sup>(이하 ‘잔여지2’ 라 한다)로 나뉘어졌는데, 잔여지 1은 보도로 사용되고 있고 잔여지2는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 7m<sup>2</sup>는 보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붙임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토지2에 적치되어 있던 천막 및 폐자재 등의 이동을 요구하며 사용 협조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 자	제 목	공문(공고) 번호	협조 위치	비 고
0000. 0. 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0·0□□(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공고 제0000-000호	△△△ ◎◎총괄과 -13983호	□□동 000-23	분할전 토지

일자	제목	공문(공고) 번호	협조 위치	비고
0000. 0. 0.	행정예고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편입면적: 442㎡ 중 91㎡ 등)	△△△ 공고 제0000-0000호	"	"
0000. 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0□□ 정비사업에 따른 협조요청	△△△ ◎◎총괄과 -23180호	□□동 000-27	민원토지2
0000. 0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0□□ 정비사업에 따른 협조 재요청	△△△ ◎◎총괄과 -25161호	"	"
0000. 0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0□□ 변경 지정에 따른 토지 일시 사용 알림	△△△ ◎◎총괄과 -26219호	"	"

바. 이 민원사업은 관계기관이 피신청인 및 ◇◇◇◇부와 0000. 0. 00.부터 설계 등을 협의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관계기관에게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옹벽 설치 계획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은 0000. 00. 0. 피신청인에게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원토지2에 ◆◆◆◆옹벽을 설치하는 조치계획(붙임5)을 제출하였고, 0000. 00. 00. 민원토지2에 조치계획(붙임5)과 같이 ◆◆◆◆옹벽을 설치하는 이 민원사업 설계도가 포함된 ■■0·0□□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였다. 또, 관계기관은 0000. 00. 00. 피신청인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토지2에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0000. 00. 00. 시공 완료(붙임6)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내용	관련기관	공문(공고) 번호	비고
0000. 0. 00.	■■0·0□□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요청	관계기관→피신청인	C ◎◎공사처 -354호	
0000. 0. 00.	■■0·0□□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사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요청	피신청인→관계기관	B ◎◎총괄과 -1338호	
0000. 0. 00.	■■0·0□□ 붕괴위험지역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및 현장 방문	피신청인, 관계기관	-	

일자	내용	관련기관	공문(공고) 번호	비고
0000. 0. 00.	0000. 0. 00. 현장 방문 결과 회신 [공법변경(영구앵커+격자블럭 → 기대기용벽+영구앵커공법) 등을 요청]	피신청인→ 관계기관	B ◎◎총괄과 -2167호	
0000. 0. 00.	◇◇◇◇부 사전설계심사 검토 요청	관계기관→ 피신청인	C ●●계획처 -727호	
0000. 0. 00.	◇◇부 사전설계 검토 요청 회신 (터널 굴착 및 발파를 위한 사면 안정성 확보 대책 등 자문위원 검토 내용)	피신청인→ 관계기관	B ◎◎총괄과 -5121호	
0000. 0. 00.	「◇◇부 사전 설계 검토」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송부 (■■0,0□□)	관계기관→ 피신청인	C ●●계획처 -2416호	
0000. 0. 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0 · 0□□ 사전설계 검토 결과 알림) [※ ‘조건부 승인’으로 설계도서 보완하여 사업 협의(△△△청) 후 조치계획 제출 ※ 0□□ 일부구간 당초 ◆◆◆ 옹벽 설계 제외 검토 필요(3~5단→1단)]	피신청인→ 관계기관	B ◎◎총괄과 -20011호	중앙 사전 설계 검토 (00,0.0)
0000. 00. 0.	사전설계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서 제출(■■0 · 0□□)	관계기관→ 피신청인	C ●●계획처 -4145호	
0000. 00. 00.	사전설계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서 보완 요청(■■0 · 0□□) ※ 내용: 조치계획(안)의 ■■0□□ ◆◆◆옹벽(1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옹벽 설치 계획 보완 후 재협의	피신청인→ 관계기관	B ◎◎총괄과 -24783호	
0000. 00. 0.	사전설계 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서 보완 제출(■■0 · 0□□)	관계기관→ 피신청인	C ●●계획처 -4569호	불임5
0000. 00. 00.	■■0,0□□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성과품 송부	관계기관→ 피신청인	C ●●계획처 -5001호	불임4 포함
0000. 00. 0.	■■□□ 정비공사 현장 실정에 따른 변경사항 검토 결과 회신 ※ 기존 설치된 00000 철거 후 전면 재설치 등	피신청인→ 관계기관	B ◎◎총괄과 -30284호	
0000. 0. 00.	■■0□□ 붕괴위험지역 공사 완료	관계기관	-	불임6

사.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상에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사업구역 용지도 (붙임4) 밖에서 시공되었으나,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역 용지도를 제외한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는 동일하게 시공(붙임7), 이 민원사업 설계도 옹

벽과 시공옹벽의 좌표 비교)되었으며, 이 민원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민원토지2 중 86㎡, 민원토지3 중 91㎡ 등 총 177㎡)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절차는 없었고, 피신청인은 0000. 0. 00. 관계기관이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아. 민원토지1은 0000시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대로 1류, 폭 00m~00m)로 지정·고시(붙임8)되어 있으며, 0000는 0000년경 민원토지1 인근에서 ‘OO로 가로화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민원토지1의 도로편입 경위 등 보상자료는 없다. 다만, 민원토지1에 대한 보상은 신청인의 민원 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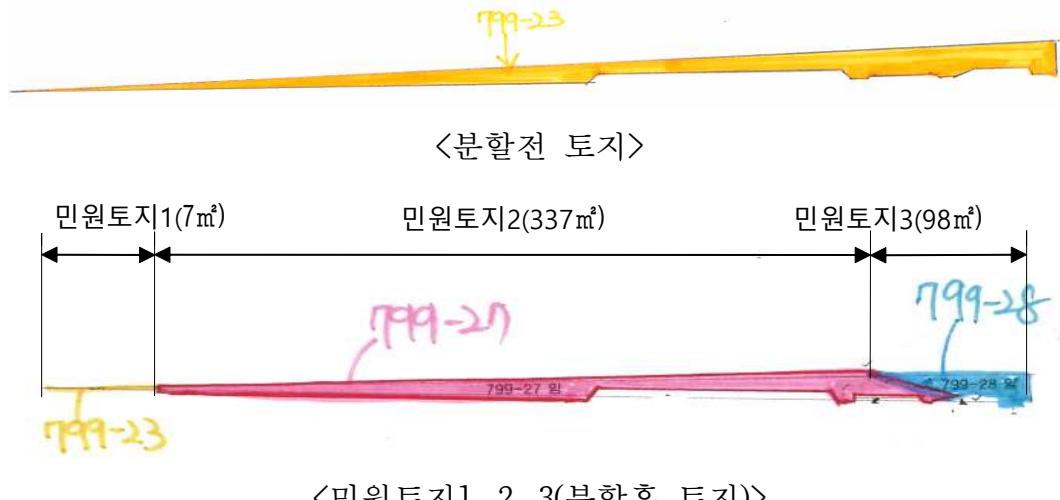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법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붕괴 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민원토지2 337㎡ 중 86㎡는 0000. 0. 00. 시공이 완료된 이 민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최종 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신청인 소유인 민원토지2 337㎡ 중 편입지 86㎡와 관계기관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사업 최종성과품에 포함된 민원토지3 98㎡ 중 편입지 91㎡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에 따라 편입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약에 따라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⑤ 피신청인은 납품된 사업구역 용지도와

이 민원사업 설계도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 민원사업에 대한 각종 하자를 살펴 준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⑥ 한편, 이 민원사업으로 설치된 00과 00000 등으로 민원토지2, 3은 177m<sup>2</sup>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258m<sup>2</sup>가 남았는데, 민원토지2의 잔여지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잔여지 1(109m<sup>2</sup>)과 잔여지 2(142m<sup>2</sup>)로 나뉘어져 있고 보도로 사용되거나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 자체가 어려우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는 7m<sup>2</sup>에 불과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민원토지2 337m<sup>2</sup> 중 편입지 86m<sup>2</sup>를 ■■0□□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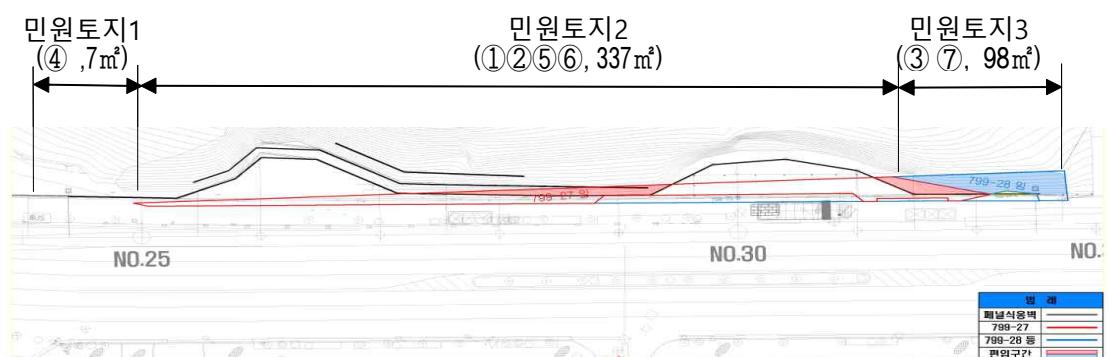
##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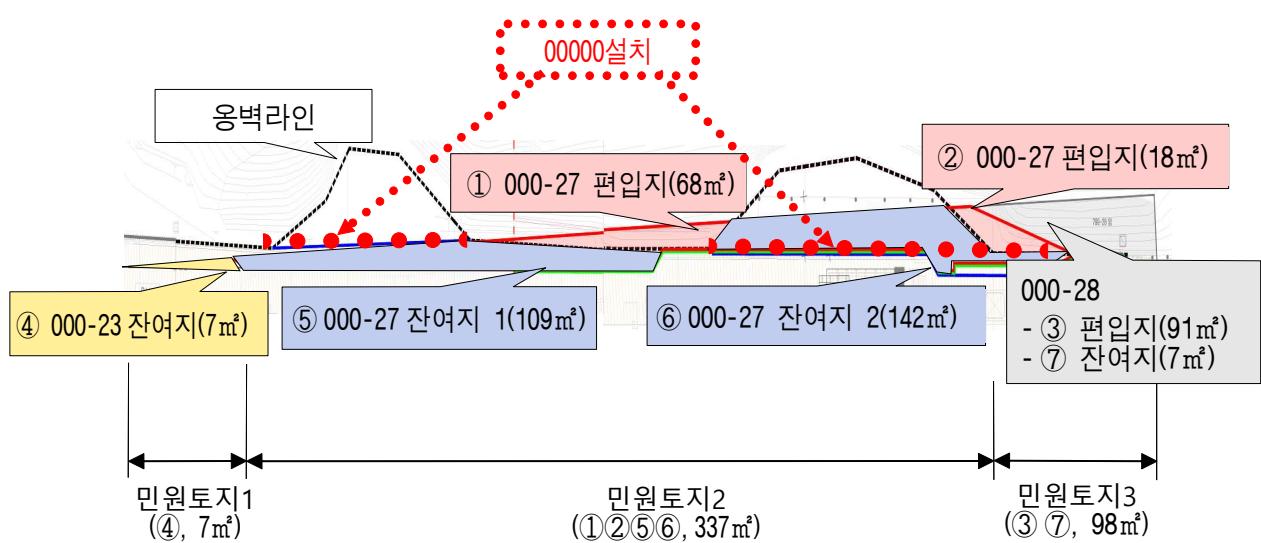
<붙임1>



<붙임2>



<이) 민원사업(00 설치 현황)>



<이) 민원사업으로 인한 편입 및 잔여지 현황>

<붙임3> 변경 전 · 후 고시도면

**변경 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

<그림 생략>

**변경 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

<그림 생략>

<붙임4>

<그림 생략>

<i> 민원사업 설계도 표지>

<그림 생략>

<사업구역 용지도>

<붙임5>

<그림 생략>

<붙임6> 공사완료 사진 및 편입지·잔여지 현황

<그림 생략>

① 000-27 편입지: 68m<sup>2</sup>, ② 000-27 편입지: 18m<sup>2</sup>, ③ 000-28 편입지: 91m<sup>2</sup> ④ ~ ⑦ 잔여지

<④ ~ ⑥ 잔여지 세부사항>

<그림 생략>

<그림 생략>

<④ 000-23 잔여지, ⑤ 000-27 잔여지 1>(보도)

<⑥ 000-27 잔여지 2>-낙석방지책 설치

<붙임7>

<그림 생략>

<i] 민원사업 설계도 용벽 좌표(위)과 시공용벽 좌표(아래)의 중요지점 비교>

<붙임8> 토지이용계획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민원토지1>

<민원토지2>

## 〈별지〉 관계법령 등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의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제8호 관련)]

####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고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자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3. 「■■■□□ 봉고위험지역 정비사업」위·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B” 와 “C” 가 00월도(◆◆~□□선) 공사와 중첩구간인 『■■■□□ 봉고위험지 정비사업』(이하 “본 사업” 또는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규모) 본 사업의 사업명,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 봉고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규모(상세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 가. 위치 : △△△ □□동 000-5번지 일원
  - 나. 사업개요 : 00정비 1식
  - 다. 사업비 : 00,000백만원(개략사업비이므로, 별표 1 상세 규모 참조)
  - 라. 시설물 : 00, 00000, 00 등
3.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사업 종료일은 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B” 와 “C” 는 협의하여 사업규모,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분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B” 와 “C” 가 분담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B” 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사업기간 내 사업비 부담  
(예산교부 지연 등 사업비 확보가 늦어질 시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비를 부담한다.)
  - 나. ■■1□□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다.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인수(하자보증증권을 포함한다.)
  - 라. 공사완료 후 준공고시 등 사업 준공절차 이행
2. “C” 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 봉괴위험지 정비사업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 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다.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기관(부서)으로(이하 “인수자”라 한다) 시설물 인계  
(하자보증증권을 포함한다.)
- 라. 본 사업 시행 관련 발생암의 매각
- 마. 사업시행에 따른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책임과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부대업무
- 바. ■■0·0■■■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C”는 실시설계 시, “B”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의 범위 등) ① 사업비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② 본 사업의 사업비 세부사항은 ■■별 실시설계 성과물 심사 후 결정하되, 공사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지장률 이설비 등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와 각종 부대사업비를 포함한다.
- ③ “B”는 “C”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C”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시행)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 시공,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C”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 시행과 관련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지장률 이설비용, 공법변경 등에 따른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B”와 “C”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실시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시공방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 증·감이 경미한 경우로서 사업비의 10% 이하는 제외)
- ③ 본 사업 시행과 관련 민원 등 공사 추진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발생될 경우 “B”와 “C”간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결정한다.

제6조(관련 법규의 준용)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월 00일

위원장 000

위원 000

위원 000